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06. .

제출자 : 평창군수

1. 의결주문

-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 한다. 라는 의결을 주문

2. 제안이유

○ 평창군분뇨처리시설은 1992년도에 운영을 시작하여 그간 여러차례 시설을 개선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평창군 정원중 결원으로 본 시설을 민간위탁 하고 현 근무인원을 타 부서의 배치하여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의하면,

구분	직영운영시	민간위탁시	비교
인력(주민포함)	6.0인	4.6인	민간위탁인력은 하수와 함께 운영시 인원
소요예산	455,352천원	367,698천원	천원미만 절사
비교점수	48점	75점	용역보고서 P49

-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사무

-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 수거된 분뇨의 반입 처리
- 방류수 법적기준 준수

□ 위탁시설 및 규모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3076-46(노론리 125-3외5필지)
- 부지면적 : 6,564m²
- 시설규모 : 건축연면적 1,644.36m²(지상 2층, 지하 1층)

시설명	건축 연면적(㎡)				착공일	건축 준공일	시설 용량	비고
	계	지하	1층	2층				
총괄	1,644.36	245.54	823.16	575.66	'03.6.16	'05.2.23	50㎏/d	
관리동	326.4	-	235.2	91.2				
처리동	1,214.46	245.54	484.46	484.46				
침전동	103.5	-	103.5	-	'08.6.17	'08.9.5	-	

- 장비보유 : 3종(5톤 트럭 1대, 스키로우더 1대, 고압세척기 1대)
- 인력현황 : 전체 7명(공무원 5, 민간감시원 2)
 - (공무원 5명) 환경6급 1, 기능7급 3, 청원경찰 1 -- 위탁 대상 아님
 - (주민감시원 2명)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의거 주변지역 주민고용
- 예산현황(2015년 기준) : 649,469천원(인건비 293,218천원 등)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지방계약법' 적용
- 위탁계약기간 : 2016. 05. 02일부터 ~ (5년간)
(2016. 05. 02일 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체 선정 일괄 위탁)
- 위탁운영관리비 : 367,698천원/년(2015.04월 원가계산용역 결과)
(2015년도 인건비 11,445,220원/월 = 137,342,640원/년) -- 4.6인 기준
※ 노무비 인상율 : 5.25%/년, 경비, 보험료 인상율 : 2.35%/년 재산정
하고 위탁관리비는 하수처리장과 함께 운영시의 금액임.

4. 첨부자료

-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 1부.

등록번호	상하수도사업소-7231	위생처리담당	상하수도사업소 장	부군수	군수	
등록일자	2015. 06. 22				2015. 6. 22.	
결재일자	2015. 06. 22	김달하	최근익	지형근	심재국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 조		기획담당 예산담당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담당	이정균 이시균 김진영 정성문	

2015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 · 관리 민간위탁 계획

<위탁 대상 및 규모>

- 위탁대상
 - 평창군분뇨처리시설 1식 : 50㎥/d
- 위탁대상
 -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 · 관리
 - 수거된 분뇨의 반입 처리
 - 건축물(구조물 포함) 및 각종 장비
- 위탁운영비 : 약367,698,천원/년(원가계산 용역 자료)
 - 운영인력 : 4.6인(지역 주민 2명 포함) - 하수와 함께 운영시 인원임

평 창 군

(상하수도사업소)

2015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

평창군분뇨처리시설은 1992년도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본 시설을 민간에 위탁 하여 현 근무인원을 타 부서의 배치하여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전문가 집단에 위탁 관리 하므로써 안정적인 분뇨 처리 및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함.

I 민간위탁 추진

○ 추진배경

- 평창군군 자치행정과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용역」을 실시하여, 2015.04.23일 상하수도사업소로 「평창군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계산용역 최종 보고서」를 송부하여 평창군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하도록 함.

○ 위탁사무의 범위

- 평창군 분뇨의 반입에 관한 사항
 - 분뇨의 반입 처리 불가
- 반입된 분뇨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 시설(건축물) 및 장비(각종 기기등) 적정 관리
- 주민 감시원의 적정 관리
 - 반입차량(내용물) 및 방류수 적정 감시 등
-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무 등

○ 민간위탁의 장점

- 평창군 근무 정원의 부족으로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현 인원을 타 부서에 배치하여 업무 누수의 최소화하고
- 전문가 집단에 위탁관리 하므로써 안정적인 분뇨 처리 및 운영에 효율화,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누수 방지

- 본 시설은 전문성과 성실성, 관심과 애정으로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시설임

○ 위탁 조건

- 위탁 기간 : 2016.05.02일부터 하수도시설과 통합하여 위탁
(2016.05.01일 하수도시설 위탁 종료)
- 수탁자 선정 : 공고하고 경쟁 입찰하여 선정
- 민간위탁비 보조 : 약367,698,천원/년(원가계산 용역 자료)은,
 - 민간위탁시 인원 4.6인(주민포함)으로 한정 한 것은, 하수도하고 통합하여 운영시의 인원 산정 및 위탁비용 임
 -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II 위탁 대상

- 위 치 : 평창군 평창읍 서동로 3076-46(노론리 125-3외5필지)
- 부지면적 : 6,564m²
- 시설규모 : 건축연면적 1,644.36m²(지상 2층, 지하 1층)

시설명	건축 연면적(㎡)				착공일	건축 준공일	시설 용량	비고
	계	지하	1층	2층				
총괄	1,644.36	245.54	823.16	575.66	'03.6.16	'05.2.23	50kℓ/d	
관리동	326.4	-	235.2	91.2				
처리동	1,214.46	245.54	484.46	484.46				
침전동	103.5	-	103.5	-	'08.6.17	'08.9.5	-	

- 장비보유 : 3종(5톤 트럭 1대, 스키로우더 1대, 고압세척기 1대)
- 인력현황 : 전체 7명(공무원 5, 민간감시원 2)
 - (공무원 5명) 환경6급 1, 기능7급 3, 청원경찰 1 -- 대상 아님
 - (주민감시원 2명) 평창군분뇨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의거 주변지역 주민고용
- 예산현황(2015년 기준) : 673,419천원(인건비 293,218천원 등)

Ⅲ 원가계산 용역(직영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 비교)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및 직영운영에 의한 노무비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의한 노무비

(단위 : 인·원/월)

기술자 등급	인원수	노임단가	노 임	휴일수당	계
중급기술자	1.0	181,229	3,987,038	-	3,987,038
초급기술자	1.6	140,862	4,958,342	-	4,958,342
보조 인력	2.0	44,640	1,964,160	535,680	2,499,840
계	4.6				11,445,220

- 직영운영에 의한 노무비

(단위 : 인·원/월)

기술자 등급	인원수	1인당 월평균급여액	금 액	비 고
기능직6급	1.0	4,488,641	4,488,641	
기능직9급	3.0	3,380,456	10,141,368	
보조 인력	2.0	1,249,920	2,499,840	
합 계	6.0		17,129,849	

○ 민간위탁운영시 5년간 운영비 추정 원가계산서

(단위: 원/월·년)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고정비	인 건 비 (A)	11,445,220	12,046,094	12,678,513	13,344,134	14,044,701	
	경 비 (B)	차량유지비	385,759	394,824	404,102	413,598	423,317
		시험분석비	107,377	109,900	112,482	115,125	117,830
		소 계	493,136	504,724	516,584	528,723	541,147
	일반관리비 (C)	596,917	627,540	659,754	693,642	729,292	
	이 윤 (D)	1,253,527	1,317,835	1,385,485	1,456,649	1,531,514	
	중 계 (E)	13,788,800	14,496,193	15,240,336	16,023,148	16,846,654	
	부가가치세 (F)	1,378,880	1,449,619	1,524,033	1,602,314	1,684,665	
	고정비 계 (G)	15,167,680	15,945,812	16,764,369	17,625,462	18,531,319	

변동비 (정산)	경비 (H)	일반운영비	1,723,739	1,764,246	1,805,705	1,848,139	1,891,570
		약품비	2,086,936	2,135,978	2,186,173	2,237,548	2,290,130
		수선비	3,106,178	3,179,173	3,253,883	3,330,349	3,408,612
		전력비	6,806,415	6,966,365	7,130,074	7,297,630	7,469,124
		소 계	13,723,268	14,045,762	14,375,835	14,713,666	15,059,436
	중 계(I)	13,723,268	14,045,762	14,375,835	14,713,666	15,059,436	
	부가가치세(J)	1,372,326	1,404,576	1,437,583	1,471,366	1,505,943	
	변동비 계(K)	15,095,594	15,450,338	15,813,418	16,185,032	16,565,379	
월간 운영비 계		30,263,274	31,396,150	32,577,787	33,810,494	35,096,698	
연간 운영비 합계		363,159,288	376,753,800	390,933,444	405,725,928	421,160,376	
연간손해배상공제료		4,539,491	4,646,169	4,755,353	4,867,103	4,981,479	
연간 운영비 총계		367,698,779	381,399,969	395,688,797	410,593,031	426,141,855	

○ 직영운영시 5년간 운영비 추정 원가계산서

(단위: 원/월·년)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인 건 비 (A)		17,129,849	18,029,166	18,975,697	19,971,921	21,020,446
경비 (B)	사업관리비	7,009,693	7,174,420	7,343,018	7,515,578	7,692,194
	약품·재료비	2,086,936	2,135,978	2,186,173	2,237,548	2,290,130
	시설장비유지비	3,106,178	3,179,173	3,253,883	3,330,349	3,408,612
	전 력 비	6,806,415	6,966,365	7,130,074	7,297,630	7,469,124
	소 계	19,009,222	19,455,936	19,913,148	20,381,105	20,860,060
일반관리비(C)		1,806,953	1,849,416	1,892,877	1,937,359	1,982,886
월간 운영비 계		37,946,024	39,334,518	40,781,722	42,290,385	43,863,392
연간 운영비 합계		455,352,288	472,014,216	489,380,664	507,484,620	526,360,704

IV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원가계산용역 : 자치행정과에서 완료
- 민간위탁 세부 추진 계획 : 상하수도사업소
- 평창군분뇨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 수렴
- 평창군의회 동의 : 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 일상감사의뢰 : 기획감사실 로 의뢰하고 의견서 받는다
- 의견서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결의 한다
- 위탁자 선정
 - 공고(공고안을 작성하여 재무과에 의뢰)
 - 참여자의 제안서 접수
 - PQ(사업수행능력평가)
 - 평가위원회를 위촉
 - 사업수행계획을 평가
 - 위탁업체를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를 합산)
 - 재무과로 통보(가격협상 - 재무과와 선정된 업체)
 - 선정업체와 계약하고 사업소에 통보
 - 사업소에서는 계약된 업체와 협약서를 체결
 - 협약서는 공증하고 인수인계 한다

V 위탁 근거 및 사무의 기준

- 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0조
- 위탁사무의 기준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VI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 : 2015. 06
- 주민협의체 사전 동의 : 2015. (의회동의 후)
- 평창군의회 동의 : 2015. (미정)
 - 사전 설명(2015. 06월)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일상적 처리 절차)
- 일상감사(기획감사실) : 2016. 02
- 의견서 보완 및 공고 : 2016. (하수도 민간위탁과 통합 시행)
- 제안서 접수 및 PQ심사 : 2016. (하수도 민간위탁과 통합 시행)
- 평가위원 위촉 및 수행계획평가 : 2016. (하수도 민간위탁과 통합 시행)
- 계약, 협약서체결, 공증등 2016. (하수도 민간위탁과 통합 시행)
- 업무인계수계 : 2016. (하수도 민간위탁과 통합 시행)

VII 행정 사항

- 협약체결 즉시 예산전용 : 기획감사실 협조

2015.05.31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사용내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목			부기명	잔액
하수도 관리	위생적 하수처리 (수특)	분뇨처리 시설운영	201-01	45,253	1,723	○ 피복비 등	43,530
			201-02	170,466	50,869	○ 공공요금 등	119,597
			204-03	2,400	1,200	○ 대민활동비 등	1,200
			206-01	36,000	13,450	○ 약품구입등	22,550
			301-11	28,000	9,375	○ 감시원 보상금 지급	18,625
			401-01	59,878	0	○ 기기수리(소모품)	59,878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 (수특)	인력 운영비 (보조)	101-01	237,378	93,091	○ 인건비(5월까지)	144,287
			101-01	48,940	20,094	○ 인건비(5월까지) 기타직보수(청경)	28,846
			204-02	6,900	3,450	○ 직무수행경비	3,450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수특)	기본경비 (위생환경)	201-01	6,154	1,534	○ 사무용품등	4,620
			202-01	8,100	2,439	○ 국내여비(관내·외)	5,661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수특)	당직실 운영(위환)	201-01	23,950	10,050	○ 당직비(5월까지)	13,900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 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 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하거나 위탁 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 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끝.